산업통상자원부 http://www.motie.go.kr	**보도참고자료**	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하나된 열정 하나된 대한민국

배포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배포일시	2018년 1월 23일(화요일)	담당부서	통상법무과
담당과장	신정훈 과장(044-203-5770)	담 당 자	장재량 서기관(044-203-5772)

WTO 한미 세탁기 분쟁관련 양허정지 요청

□ 1.22.(월) 오전 10시(제네바 현지시간), 세계무역기구(WTO) 분쟁해결기구(DSB, Dispute Settlement Body) 정례 회의에서 우리 정부는 세계무역기구 **한미 세탁기 분쟁 (DS464) 관련, 미국에 대한 양허정지 승인을 요청**했다.

□ '16.9월 우리나라는 세계무역기구(**WTO**) **한미 세탁기 분쟁에서 최종 승소**했고 이에 따라 미국은 세계무역기구 판정을 이행해야 할 의무를 부담했으나 **이행기한('17.12.26)*내에 이행하지 않았다.**

* 세계무역기구(WTO) 협정은 판정을 즉시 이행할 수 없는 경우 합리적 이행기간(RPT, Reasonable Period of Time for Implementation)을 부여토록 규정하고 있으며, 이번 분쟁에서는 WTO의 중재판정에 의해 15개월의 이행기간(RPT)을 부여했었음

□ 세계무역기구(WTO) 협정*은 승소국이 패소국의 판정 미이행에 대응할 수 있도록 **승소국에게 양허정지 신청 권한을 부여**하고 있으며,

○ 우리의 이번 양허정지 신청은 **미국측의 조속한 판정 이행을 유도하기 위한 것**으로써, 세계무역기구 협정이 모든 회원국에 보장하는 **절차적 권리를 적시에 행사**하는 취지이다.

* 분쟁해결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: WTO DSU(Understanding on Rules and Procedures Governing the Settlement of Disputes)

* (WTO DSU 제22.2조) 이행기한까지 패소국이 이행에 실패하고, 미이행에 대한 보상방안에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은 경우, 승소국으로 하여금 이행기한 만료 후 20일 이후에 WTO DSB에 양허정지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

□ 우리가 신청한 **양허정지 금액은 연간 7.11억 달러**이며, 이는 미국의 협정 위반 조치로 인해 발생한 **한국산 세탁기의 대미 수출 차질액**을 계산한 결과이며,

○ 대상 분야에 대해서는 미국측의 모든 대한(對韓) 수출 상품 중에 추후 우리나라가 실제 정지대상을 결정할 수 있다.

□ 다만, 이번 회의에서 미국이 **우리의 양허정지 요청 수준(7.11억 달러)에 대해 반대의견을 제시**함에 따라,

○ 세계무역기구(WTO) 규정에 의거, 양허정지 요청 수준을 논의하는 중재 절차가 개시되었으며 분쟁해결기구(DSB)의 **우리측 양허정지 요청에 대한 승인**은 세계무역기구 **중재 판정결과가 나온 이후 시점으로 유보**했다.

* (WTO DSU 22.6) DSB는 양허정지 요청이 제기되는 경우 RPT 종료 후 30일 이내에 승인해야 함. 다만, 이행의무국이 승소국이 신청한 양허 정지의 수준 및 분야 등에 대해 반대하는 경우 WTO 중재 판정으로 회부되며, 동 중재 판정 진행 중에는 보복 신청은 승인되지 않음

* WTO 협정은 중재판정 시한과 관련, RPT 종료 후 60일 이내에 완료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중재절차 개시이후 수개월이 소요될 수 있음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통상법무과 장재량 서기관(044-203-5772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

붙임 **WTO 한미 세탁기 분쟁 개요**

□ **(개요)** 미국의 한국산 세탁기에 대한 반덤핑·상계관세 부과('13.1월)에 대해 **WTO 반덤핑/상계관세 협정 위반사유로** 제소('13.8월)

* (삼성) 반덤핑 9.29%, 상계관세 1.85%, (LG) 반덤핑 13.02%

○ 미측은 한국의 수출이 '표적덤핑'*이라는 판단 하에, 표적덤핑에 대한 제로잉 기법 등을 적용하여 고율의 관세를 부과

* 특정한 구매자, 지역, 기간 등의 관점에서 덤핑으로서 이 경우 반덤핑 협정은 통상적인 덤핑상황에서와 다른 예외적인 가격비교방법을 사용할 수 있게 허용

□ **(분쟁결과)** 패널판정('16.3월)시 주요 쟁점에서 승소하였으며 **상소심에서도 패널 패소쟁점을 포함한 대부분 쟁점에서 최종승소**('16.9월)

○ WTO는 미국의 표적덤핑 판단 기법, 덤핑마진 및 상계관세 계산 방식 등이 WTO 반덤핑 협정 및 보조금 협정에 위반됨을 판정

□ **(이행경과)** 미국측은 판정의 이행을 위해 15개월의 이행기간*('17.12.26까지)을 부여받았으나, 동 시점까지 이행을 완료하지 않음

□ **(상세 판정결과)**

구분		쟁점	상소 (16.9.7)	패널 (16.3월)
반덤핑	표적덤핑	- **표적덤핑 판단기준**: 미측의 표적덤핑 판단기법이 반덤핑협정에 위배되는지 여부	승소	승소
		- **설명의무:** 미측이 통상적인 가격비교방법(평균-평균, 거래-거래)을 적용할 수 없는 이유를 충분히 설명했는지 여부	승소	승소
	제로잉	- **제로잉 허용 여부**: 표적덤핑이 인정될 경우 제로잉 가능여부	승소	승소
		- 평균-거래 **비교방법의 적용범위**: 표적덤핑된 거래뿐 아니라 조사대상 거래 전체에 W-T 방식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	승소	승소
		- 표적덤핑된 거래와 기타 거래군의 덤핑마진 합산시 제로잉 적용가능성(Systemic disregarding)	승소	패소
보조금	특정성	- **사실상 특정성** : 삼성에 대한 세액공제(보조금)의 절대액이 크다는 점으로 동 보조금에 사실상 특정성이 있다고 인정되는지 여부	승소	승소
		- **지역적 특정성**: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이외 지역(전체 국토의 98%)에 투자시 세액공제를 제공한 것에 특정성 인정여부	패소	패소
	보조금 계산 방식	- Tying: 세탁기에 지원된 금액이 아닌 삼성전자 전체에 지원된 금액으로 보조금 비율을 계산한 점이 보조금 협정을 위배했는지 여부	승소	패소
		- **해외매출액 포함 여부**: 보조금 비율 계산시 삼성의 해외매출액을 제외한 점이 보조금협정을 위배했는지 여부	승소	패소